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질병·약물 운전금지 판단기준 및 측정절차 질의·답변

※ 공개용 사본: 개인 식별정보 및 연락처는 제외했습니다.

1. 과로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과로에 대한 판단은 졸음운전 등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질병의 범위와 판단기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질병에 대한 내용이 일부 있으나, 약물의 범위처럼 질병의 범위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약물의 구체적인 범위

제45조에서 말하는 약물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약물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45조에서 말하는 약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정의)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다만, 약을 복용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졸음·어지럼증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한해서 약물운전 대상이 됩니다.

4. 경찰의 현장 판단기준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직선보행·회전 상태 및 한 발로서기 등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서식] 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5. 타액 간이시약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현장평가에서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타액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마약검사에서도 사용중인 간이시약 검사기를 사용하게 되며 암페타민,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등 총 10종에 대해서만 검출 가능합니다.

간이시약 검사기에서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거나 약물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소변 검사 또는 혈액 채취를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감기약·비염약을 복용하였더라도 약물류로 분류되는 물질이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의약품 등을 확인하는 부분은 교통수사계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또는 소명)할 수 있습니다.

6. 간이검사 양성 이후 약물운전 판단

타액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약물운전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소변 또는 혈액 채취를 통해 어떠한 약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관련 판례 - 유죄 인정 사례

[1] 피고인이 차량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서 이를 투약한 사실, 그 직후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394 판결).

[2] 피고인은 요관 결석으로 처방 받았던 코노펜캡슐(코데인 포함)을 복용량(1회 1알)을 초과하여 2알 복용하였고 코데인의 약효는 일반적으로 4~6시간 지속되는바, 피고인은 코데인의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 내에 운전을 하였고, 운전 시작 무렵부터 비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넘어서 이미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임(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423 판결).

관련 판례 - 무죄 인정 사례

[1] 약물 상습 투약자가 5일 전 투약은 확인되나 사고 당일 투약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사고 이후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음에도 약물운전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노2643).

[2] 피고인이 교통사고 약 21시간 전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처방 받은 졸피뎀, 클로나제팜 성분의 약을 복용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정상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인 모습은 교통사고 직후 당황 등의 감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약물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86).

7. 혈액 채취 등 정밀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법에서 규정하는 혈액 채취 등은 현장에서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소변의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으로 되어 있어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을 포함한 경찰서가 가능하며, 혈액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경찰관이 함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혈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채취된 시료는 해당 경찰관서 교통수사계 수사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약물운전의 약물의 경우 총 490여 종이 있으며, 사람에 따라 약물 농도 기준이 달라서 알코올만 되어 있는 음주와는 다르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결과에 따라 약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8. 운전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건 및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어 있어 현장에서 재측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9. 일반 운전자가 운전 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기준, 안내자료, 행동지침 등은 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운전하기 전에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몸 상태에 따라 운전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연락처는 공개용 사본에서 제외했습니다.

원자료의 질의·답변 내용은 유지하고, 공개에 불필요한 개인 식별정보 및 연락처는 제외한 공개용 사본입니다.